

울산지방법원 2021. 1. 13 선고 2020가단11331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C

변론 종결 2020. 12. 16.

판결 선고 2021. 1. 13.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가. 피고와 D 사이에 2020. 2. 26.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D에게 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2020. 2. 26. 접수 E로 마친 저당권설정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D는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와 사이에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하여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F는 2006. 1. 27.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D에 대한 카드대금채권을 양도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2020. 5. 19. D에게 위채권양도를 통지하는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하여 그 무렵 위 우편물이 D에게 도달하였다.

나. D는 2020. 4. 7. 카드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연체대금이 발생하였고, 2020. 6.18. 기준 원고의 D에 대한 카드대금채권은 합계 15,494,591원이 남아 있다.

다. 한편 D는 2020. 2. 26. 피고와 사이에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2020. 2. 26. 접수 E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채권가액 18,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쳤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보전채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는 D와 사이에 신용카드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있었고, D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일로부터 약 한달 남짓 경과한 시점에 신용카드대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인 2020.2. 26. F의 D에 대한 카드대금채권은 가까운 장래에 현실화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므로, 실제로 위 채권을 양수한 원고의 D에 대한 양수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재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 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 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25842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4978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돌이켜 보건대, 갑 10 내지 1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이 법원의 울산광역시 중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D는 적극재산으로 시가 1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자동차 및 시가 46,000,000원 상당의 울산 중구 G건물 제4층 H호 시가 합계 56,000,000원 상당을 소유하고 있었던 반면, 원고에 대한 카드대금채무를 비롯하여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 18,000,000원, I단체에 대한 대출금채무 362,867,000원을 부담하는 등 채무합계액이 398,267,000원에 이르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D는 채무초과 상태였다고 할 것이고, D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으로 써 그 소유 재산을 채권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D는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다른 일반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D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근거하여 이 사건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D가 J에 근무하고 있어 채무초과상태를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의 악의 추정을 반복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피고와 D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D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2020. 2. 26. 접수 E로 마친 저당권설정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사 진현지

<별지>

자동차의 표시

차 명	아반떼
등록 번호	
사용 분거지	울산광역시 중구
연 식	2019
차 대 번호	
제원관리번호	A08-1-00103-0113-1218
원동기 형식	G4FM
차 종	승용 차량
용 도	자가용
출 처 구 분	신조차
최초 등록일	2018-12-13
최종 소유자	
저당권설정 접수번호	
을부번호	
저당권설정일	2020-02-26
채권가액	18,000,000원
저당권차	